

2025/26

도선사(도선수습생) 등

도선법

엠북 해양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20분 완성
- ★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- ★ 법, 시행령/시행규칙(일부) 종합

도서명 : 도선법

ISBN : 979-11-7393-062-1

발간일 : 2025-08-19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4,500원



도선법
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4)

제2장 도선사면허 등(p6)

제3장 도선 및 도선구(p21)

제4장 보칙(p35)

제5장 벌칙(p38~42)

[용어]

톤은 선박 총톤수

[약어]

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

면허는 도선사면허

면허증은 (도선사)면허증

수습생은 도선수습생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3조

1. 목적

- 면허와 도선구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 규정
-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 안전 도모
-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

2. 정의

가. 도선

-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

나. 도선사

-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 할 수 있는 면허 받은 자

다. 수습생

- 수습생 전형시험 합격 후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 실무수습 받고 있는 자

3. 적용 범위

-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 직무 대행자에 적용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도선사면허 등

4~16조

1. 면허

가. 도선사가 되려면 장관의 면허 받아야 함

나. 장관은 1~4급 도선사로 등급으로 구분해
도선구별로 면허 함

다. 면허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
종류

: 총톤수가 다음 이하

1) 1급 경력 1년

- 이상은 모든 선박

- 미만은 12만톤(위험화물운반선은 10만톤)

2) 2급은 7만톤(위험화물운반선은 6만톤)

3) 3급은 5만톤(위험화물운반선은 4만톤)

4) 4급은 3만톤(위험화물운반선은 2만톤)

-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제외

라. 면허 받으려면 면허 요건과 등급별 기준을
갖추고, 장관에 면허 신청

- 면허 등급 변경시도 같다

마. 장관은 면허 하면 면허 원부에 등록하고

면허증 발급

바. 도선사는 면허증이 분실, 헐어 못쓰게 되거나, 기재사항 변경시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 개서받음

2. 면허의 요건 등

가. 장관은 다음 모두 갖춘 자로서 면허 등급별로 경력 기준에 적합한 자에 면허

1) 6천톤 이상 선박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 - 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내 1년 이상 승무한 경력 포함

2) 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도선 하려는

도선구에서 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

3) 도선사 시험 합격

4) 신체검사 합격

나. 도선사 경력 기준

- 1급은 2급, 2급은 3급, 3급은 4급으로,
- 1년 이상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

3. 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

- 도선사는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면허증 대여못함
- 누구든지 도선사 자격 취득않고 명의 사용, 면허증 대여받거나, 이를 알선 못함